



<b>재무실</b> 156 S. BROADWAY, SUITE 114 TURLOCK, CA 95380-5454 209-668-5570	정책 #:19-01
	MSI #:
<b>법령 참조:</b> 캘리포니아주 법안 998	<b>기존 날짜:</b> 09/01/19
<b>제목:</b> 생활용수 서비스 중단	<b>수정 날짜:</b> 09/01/19

상원 법안 998: 생활용수 서비스 중단, 캘리포니아 정부 법령 섹션 60370-60375.5

이는 알림, 요금 할당 및 서비스 중단을 비롯한 채무 계정에 대한 터록시 재무 부서의 행정 조치입니다. 이 정책은 시청 웹사이트에서 시민에게 공개됩니다. 재무실은 (209) 668-5570 번으로 연락하여 본 정책에 따른 요금 미납에 대한 수도 서비스 중단을 피할 수 있는 옵션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의 목적상 채무 불이행 계정은 기한 60 일 이후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미납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될 유틸리티 서비스 계정으로 정의합니다. **패널티** 및 모든 기한 초과 요금은 전액 납부해야 하며 서비스 중단을 피하려면 재무실에서는 채무 불이행 고지에 명시된 서비스 중단 날짜 전날 12:00 시 정오까지 요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서비스가 중단되면 서비스 복구를 위해서는 기한 납부액에 더불어 추가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 불이행 계정 잔액과 관련한 채무 불이행 알림은 각 계정 소유주에게 **5일차** 고객 기한 이후 발송됩니다. 또한 고객 유틸리티 계정에 있는 전화번호로 고객에게 SMS 문자 또는 전화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고객에 대한 각 연락 수단에는 서비스 주소, 계정 번호, 총 기한 경과 잔액, 납부 기한 및 복구 수수료(고지서가 미납이고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상기 언급된 우편 발송 채무 불이행 고지 외에도 **서비스 중단 7일 전에** 고객은 고객의 유틸리티 계정에 있는 전화번호로 서비스 중단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SMS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서비스 중단을 막으려면 아래 명시된 대로 재무 부서에 추가 고려 요청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1차 의료 제공자의 인증 의료 서신
2. 가구에서 다음 보험 수혜자인 개인이 일반 청구 주기 중에 재정적으로 납부가 불가능함을 증명:
  - a. CalWORKs, CalFresh, 산모, 신생아 및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California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 b. Medi-Cal
  - c. 생활 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주 보충 지급 프로그램(State Supplementary Payment Program)
  - d. 가구 연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인 경우
3. 납부 할부 상환 합의 또는 납부 합의

시에서는 또한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대체 납부 일정이 필요한 고객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청구 이의 제기 및 청구서에 대한 일반 질문은 재무실에 전화하시거나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청구 금액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의 제기를 위한 양식은 156 S Broadway Suite 14, Turlock CA 에 위치한 재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